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3. 6. 14.(수) 10:06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김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 (3인)
- 불참위원 : 없음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6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세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 회의록 확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16차, 제17차, 제18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비공개 안건인 <의결안건 가>를 마지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안건 심의에 앞서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간단하게 하시지요.

○ 김현 상임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7일 사무처 인사와 관련해서 지상 발령을 먼저 보고 추후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무처 인사가 났는데 상당한 분들이 파견 발령을 받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아래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파견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전혀 보고가 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사무처에서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보내온 자료가 일부 은폐된 형태로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하고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여기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 이후에 제가 몇 가지 방송정책국에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 회의가 그런 충분한 자료를 받고 그것을 기초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심히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국민참여 토론후과 및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권고안을 통보받았는데 이 자료의 원본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 김현 상임위원

- 왜 안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회의 진행을 시작하고,

○ 김현 상임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말씀을 들었으니까,
- 김현 상임위원
 -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 김현 상임위원
 -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오늘 회의가 상당히 길게 될 것 같습니다. KBS 이사회 속기록을 부탁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3일 김효재, 안형환 위원께서 기자실을 방문해서 법률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률검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가지가 미보고됐기 때문에 회의 중간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입니다. KBS 이사회 속기록과 그다음에 3월 13일 법률검토에 대해서 법률검토했는지에 대한 것, 했으면 했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나중에 실제로 회의 안건 다루실 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 진행하면서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2023-19-046)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재)부산영어방송재단과 (재)부산국제교류재단의 합병”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재)부산영어방송재단과 (재)부산국제교류재단의 법인합병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청

현황 주요내용입니다. (재)부산국제교류재단이 (재)부산영어방송재단을 흡수 합병하고 법인명을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방송사의 연주소, 송신소, 주파수, 방송구역은 현행과 같이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추진경과입니다. '22년 8월 부산광역시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3년 2월에 (재)부산영어방송 재단이 저희 위원회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기부 기술심사, 청취자 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 제10조 심사사항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따른 검토 결과, 합병 후 법인명 변경 외에 부산영어FM방송국의 연주소, 송신소, 주파수, 방송구역, 제작비 투자계획, 편성계획 등 방송 관련 사항은 변경이 없으며, 합병 이후 방송 및 교류사업은 본부형태로 독립적으로 유지하게 되며,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등 재무건전성 등은 제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허가 여부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른 출연기관 합병이며, 합병 후 법인명 변경 외에 방송 관련 사항은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허가함이 적정합니다. 2019년 재허가시 (재)부산영어방송재단에 부여된 허가 유효기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사항입니다. <6> 향후계획입니다. 오늘의 결되면 변경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23년 7월에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이 출범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부산광역시의 공공기관 간 통폐합과 기능 조정으로 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합병 건입니다. 법인명 외에 특별한 방송 관련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허가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변경허가 이후 합병법인은 승계된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잘 숙지해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른 출연기관 간 합병으로 방송구역 등의 변경 없이 각 기관의 고유업무인 방송 및 교류사업은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제고되는 공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변경허가 시 제출한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정적인 방송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2023-19-047)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5월 3일에 요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올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과기정통부에서 (주)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방통위에서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사업자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의 사전동의 요청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대상사업자의 허가 기간 동안 운영실적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향후 사업계획 및 「방송법」 제10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허가유효기간 7년으로 8개의 조건을 부과하여 (주)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해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11개사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표>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동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약식심사위원회 운영 개요입니다. 과기정통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점수를 모두 충족하여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따라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과기정통부의 허가조건(안)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의 실현 가능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부합하는지를 중점 검토하고, 지역채널 운영 및 투자, 경영투명성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요청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주)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방송의 공익성 및 시청자 의견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지역채널심의위원회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씨엠비에서 자체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 디지털서비스인 레인보우TV 운영이 기존 디지털 방식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처에서 검토한 종합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자 권익보호 및 지역채널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시청자위원회 운영 및 레인보우TV 운영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재허가 조건에 동의하되,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하여 시청자 권리보호 및 지역채널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담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이 이루어지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 상임위원

-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심사위원들과 함께 사전동의 건을 충실히 심사해 주었습니다. 특히 시청자위원회 대표성 그리고 이용자 보호강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재허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한 사전동의 심사내용을 과거정통부에 전달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방송심의 제재조치명령 재심에 관한 건 (2023-19-048)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라> “방송심의 제재조치명령 재심에 관한 건-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심의 제재조치명령 재심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청구한 방송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주의’ 처분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 및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10조(재심결정)에 따라 TBS의 재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경과사항입니다. 올해 1월 30일 방심위는 TBS에 ‘주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2월 21일 방통위는 TBS에 방심위 요청대로 처분하였습니다. 2월 27일 TBS는 방통위에 고지방송 이행과 관련된 집행정지 청구 및 제재조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2월 28일 방통위는 방심위에 재심 의견을 요청하였고, 3월 20일 방심위는 방통위에 ‘재심 기각’하는 의견을 송부해 왔습니다. 다음은 원심 결정 내용입니다. TBS-FM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안을 다루면서, 참사의 원인에 대해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내용,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근거 없는 내용 등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내용 등을 방송함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책한 정보제공) 위반으로 ‘주의’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재심 결정 요건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6조(재심청구 등)와 관련된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재심 결정과 관련해서는 TBS의 재심 신청사유, 방심위에서 재심에 대한 기각 의견 등을 고려할 때 TBS의 재심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각 결정이 적정하겠습니다. TBS에서 보내온 재심 청구의 주요 주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초기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본 건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방심위의 의견은 이에 대해서 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의결한 것은 단편적 사실관계의 오류에 대한 것이었으나, 본 건은 진행자의 단정적인 견해를 수일에 걸쳐 반복·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전달함에 따른 제재조치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원심결정 당시와 재심청구 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위원회의 원심결정을 번복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항후 조치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수일 내에 조속히 청구인에게 재심 결과를 통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먼저 한 가지 확인할 텐데 혹시 이 건 빼고 최근 신속심의 안건으로 처리된 방심위 행정처분이 있었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신속심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 김 현 상임위원

- 전체적으로 방심위가 심의한 것 중에 법정제재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신속심의 안건으로 다루어진 건이 이태원 참사 건 말고 있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그 부분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신속심의는 방송심의소위, 통신심의소위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난번에 정연주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기간 중에 'MBC 바이든 관련'하여 신속심의 안건으로 다루어 달라고 할 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이 "신속심의 안건은 상정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 김 현 상임위원

- 이례적인 일이지요. 2008년도 방통위 설치 이후 신속심의로 안건이 다뤄져서 서면의결하던 것을 대면으로 논의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신속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요. 2008년 이후 방심위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가 대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요?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서면안건을 대면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위원님 중 한 분이라도 반대의견이 있거나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이 오늘 다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신속심의로 다루어지고 그 내용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을 때 왜 한상혁 위원장님 계실 때는 안 됐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위원 중 한 사람이 문제제기하면 서면에서 대면회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의 위원장이 회의 안건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 규칙에 따라서 하지 않은 것입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회의 규칙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회의운영규칙에 따라서 서면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을 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의 반대가 있거나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방송심의 업무처리지침 제정할 때부터 위원회 전원합의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데 지금 의안 정리하는 뒤에 배석해 있는 과장님,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방심위에서 재심이 들어와서 방통위를 거쳐 방심위에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서면의결하는 것을 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배종섭 기획조정관

- 규정상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에 대한 논의를 대면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수차례에 걸쳐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회의 소집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 배종섭 기획조정관

- 안건 상정과 회의 소집은 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회의 규칙에 위원 중 한 사람이 서면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대면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면 대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배종섭 기획조정관

-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왜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까?

○ 배종섭 기획조정관

-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안건 상정 소집권자가 소집해야 하고, 제가 기획조정관으로서는….

○ 김 현 상임위원

- 회의 규칙에 있다면서요?

○ 배종섭 기획조정관

- 회의 규칙에 대면으로,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회의 규칙을 여긴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배종섭 기획조정관

- 아니지요. 대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 김 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심의기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행정권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심의 의견대로 처분명령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다른 차원의 안건입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참사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했고 국정조사 일정을 정하고 난 뒤에 이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왜 이것이 신속심의가 됐는지 그리고 왜 병합심의를 했는지, 법정제재가 됐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당시 TBS 측에서 본 위원에게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들여다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신속심의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건은 대면 회의를 통해 재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대면회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안 돼서 5월 29일 안에 제재조치 결정문을 전달해야 하는데 기일이 지나서 오늘에서야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인데 본 안건은 위원회 5인 체제에서 방송심의 재심 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의결에 반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MBC 바이든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심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정연주 위원장은 “민원이 접수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방심위는 MBC-TV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바이든 논란 심의 일정에 대해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방송내용에 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검토 후 추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12월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즉, 방심위는 민원이 제기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건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속심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신속심의는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서 방심위 위원들 간 이견이 있는 알고 있습니다. 신속심의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실관계 확인없이 추진하게 되면 특정 사안에 대해 신속제재 명분만 주게 되어 형평성 훼손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제37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히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11월 22일 소위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10월 31일부터 11월 4일 방송분에 대한 ‘주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의 의혹을 제기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언론사의 공적책무 수행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이후 진상규명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 책임규명의 문제, 희생자·유가족·생존자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의혹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신속심의를 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을 위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11월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 진상규명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개최하여 ‘법정제재’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속심의가 여론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심의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연속프로그램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건으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회차에서 심의규정 위반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심의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TBS <김

어준의 뉴스공장>이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그리고 11월 4일 방송 중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에 연속프로그램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주제의 동일성이 희박한 방송내용을 신속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병합심의하였습니다. 촛불집회, 광화문광장 불허 결정, 서울시 안전 관련 예산 삭감, 동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인터뷰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포함하여 신속병합 심의하고 ‘주의’ 처분으로 한 것이 과연 이 규정에 맞는지에 대한 의혹제기입니다. 또한 수 회의 사전적 의미는 두세 번 또는 여러 번이나 신속심의와 마찬가지로 병합심의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동일 유사 내용 심의결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법정제재 ‘주의’ 이후에 2022년 11월 7일부터 9일, 11일, 16일 총 5일간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주의’ 처분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일방통행, 마약과 관련하여 언급하였으나 방심위는 위반 정도 및 기존 유사 심의사례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하였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위반한다면 가중처분을 하거나 동일한 제재수위 유지를 통해 객관성과 균형성을 담보해야 하나 상이한 심의결과로 신뢰성이 훼손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할로윈 일방통행 관련하여,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2022년 12월 20일 단독심의 결과에 문제없음. 2023년 1월 16일,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회의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짧게 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이 어떻게 회의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말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아니, 지금 독립적인 방심위의 운영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월권이고 회의를 방해하지 않으시려면 줄여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병합심의 결과 ‘의견제시’ 등 동일 내용으로 이후 중복심의를 하였으며, 처분내용도 상이 하여 심의기준의 모호성과 함께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모 방송사의 인터뷰와 참사 희생자들은 마약 같은 약물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 아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자꾸 동어반복을 하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명백한 허위사실이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처분에 그치는 등 제재수위와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심의결과입니다. TBS 프로그램에서 다룬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한 의혹제기는 언론의 공적책무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제기와 유사한 내용의 수준입니다. 경찰의 사전준비 상황과 참사 뒤 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주의' 결정 이후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재판 등으로 확인될 부분들도 명확히 허위로 단정될 수 없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심의 제도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통위는 방심위 설립 취지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의에 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방송사의 제재수위 등 처분에 참여한 방심위 위원이 재심 여부를 판단하고 재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신속심의를 통해 법정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의견청취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대면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는 방심의 재심 절차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의결에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너무 동어반복을 하시면,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금 위원님 말씀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막말 하지 마시고 회의 진행하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상임위원들의 시간도 아까운 것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일 때는 판단할 수 있지만 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 김 현 상임위원

-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아니,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몇 분 했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10분이 넘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초기인 2008년 7월경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방송심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의결과를 보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행정권의 방송심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보다는 민간기구 성격을 갖는 방심위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방심위의 심의업무에 대한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동일한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방심위 재심 건에 대해서도 방심위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를 따르고 우리 위원회가 이를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방심위 내부의 운영과 또 심의 관련 법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은 저희 방통위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의 사안, 그리고 관련 법령, 방심위의 재심 기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우리가 합의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 안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은 이미 반대를 밝히셨고, 이상인 위원님은 찬성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총 3표 중 찬성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 가결하셨으니까 지금 앞서 이상인 위원님께서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관한 건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8년 7월 25일 날 <1안>, <2안>, <3안>으로 제출해서 <1안>으로 처리가 된 것 맞습니다. 방심위의 의견을 방통위에서 의결한다. 다만, 여기에서 대면으로 할 것이냐, 서면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면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한 것인데 신속심의 안건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결하는 것입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신속심의 안건….

○ 김 현 상임위원

- 신속심의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부결되는 것입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것은 추후 논의하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추후 논의할 것인지 분리해서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한 것도 부결된 것인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이 논의를 따로 제안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인가? 그러면 사무처가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을 위원장님으로 지시를 하셔야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제 생각에는 방심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 방통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희 권한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아닙니다. 그것 유권해석해 주시지요. 지금 답변 나갔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나중에 유권해석을 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위원장님이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면 못 하도록 사무처에 이야기하시는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법률검토하지 말라는 것이 2건 있었고, 사실은 방심위 논의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심의 관련 업무지침을 방통위가 만든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방심위 소관이고 방통위가 할 일이 아니냐,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우리가 해야 할지도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통위의 권한인지 사무처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회의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검토해서 회의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에 간담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통위 소관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장님, 이것 방통위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 조성은 사무처장

-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맨날 검토만 하십니까?

○ 조성은 사무처장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적어도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상당한 시간이고, 이 문제제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담당 과에서 국장님이 보고받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3월부터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 기왕에 접수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앞으로 사전에 서면·대면 보고받았을 때 상임위원의 요청을 추후에 답변하지 마시고 공개회의 때는 적어도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해 드리십시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

입니다. 올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 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하기 위해서 시행령안 제43조제2항을 개정해서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제43조제2항에 있는 후단을 '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행하여야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개정안을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시행령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난 월요일 간담회 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통령비서실에서 온 자료가 일부 훼손돼서 왔는데 그 원본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원본을 제출 안 하실 겁니까? 사무처에서 답변하든 위원장님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 문제는 제가 보니까 관계자가 누구냐와 관련된, 내용은 김 현 위원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관계자가 중요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런데 관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결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 김 현 상임위원

- 이후에도 삭제해서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하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단순히 일회성이 아닙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제가 김 위원님 말씀은 쭉 듣지 않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들으셨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제 말씀도 들어주십시오.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은 회의를 운영하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니까 김 위원님,

○ 김현 상임위원

- 저와 토론하지 마시고 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고, 그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가 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필요 없으면, 사무처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아까 위원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가장 많은 언론인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서 6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준 'TV수신료 의견수렴 결과 통보. <1>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국민참여 토론 결과 및 TV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개선권고안을 통보합니다' 이 내용이 누가 보냈는지 모른 체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질문드립니다. 징수방식 개선 관련 권고안인데 권고안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온 권고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아닙니까? 시행령 내용이 그 권고안입니까?

○ 이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권고안은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까?

○ 이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담회 전에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예, 내용을 알려주시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권고안에는 방통위와 산업부에 2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리 징수를 위한 강제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 이 2가지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그중 하나만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일단….

○ 김 현 상임위원

- 뒤 두 번째에 대한 것은 보고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그것은 계속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검토해야지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수신료는 제가 2020년 8월 24일 출근 이래 현재까지 방통위의 입장을 여러 차례에 받았습니다. 혹시 그 내용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21대 국회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안 발의 및 의견제시와 관련해서 방통위 입장이 어떻게 제출됐습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분리징수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 맞지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지금까지는….

○ 김 현 상임위원

- 속기록 다 확인하셨습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지금까지는 수신료에 대해서는….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받은 참고자료는 21대 국회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안 발의 및 의견제시 현황. <1> 방송법, 주요내용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업무와 통합하여 수신료 납입고지를 할 수 없도록 함에 대한 검토의견 요약은 뭐냐 하면 수용곤란입니다.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고 결합징수를 통한 효율성 및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결합징수방식 유지가 타당합니다. 또한 분리징수 시 악의적인 수신료 납부 회피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납부자들에게 부담이 전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2020년 7월 13일 국민의 힘 전경희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 답변 검토 요약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7일 허은아 의원이 방송법 법안 제출에 대한 수신료 납부대상자 한정 및 분리징수에 대해서 수신료 납부대상을 KBS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하며, 수신료 위탁 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합니다가 법 개정 내용입니다. 수용곤란,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준조세와 이에 따른 납부 형평성, 해외사례 및 징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현행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 맞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검토의견은 저희가 그 당시….

○ 김 현 상임위원

- 수용곤란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는데 반대, 이렇게 나가면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니까 보통 수용곤란으로 반대라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반대인 것이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래서 통상 '신중검토'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수용곤란이지 않습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이 문항에는 신중검토라는 것이 없습니다.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8일 문화일보에 기사가 나서 담당과에 “이런 내용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담당과에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검토해야 한다. 법률검토도 해야 하고 그 법률검토 결과를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한 방통위의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22년 3월 30일, 즉 3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인수위 시절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혁신과제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입니다. 이전은 이미 이렇게 수용곤란으로 나갔고, 2022년 3월 9일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27일 방통위 제5기 비전 및 인수위 국정과제를 비교해도 수신료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신료 징수방법에 대한 그 어떠한 논의내용도 없습니다. 2022년 8월 23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110대 국정과제에도 KBS 수신료와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8월 23일 날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나간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면보고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를 이야기했는데 이때도 ‘혁신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산 국민체안심사위원회라는데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두 달 만에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라, 즉 통합징수를 행할 수 없다라는 단 한 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그동안 방통위의 입장이 수용불가라고 해놓고 갑자기 여反倒이 됐습니다. 손바닥을 뒤집은 것이지요. 이렇게 빨리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진행절차를 어떤 언론보도에 따르면 60일에서 65일 안에 시행령으로 바꿔서 한국방송공사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분리징수를 했을 때, 통합징수했을 때 비교한 것 우리 스스로가 내놓은 보고서를 뒤집고 이런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정부가 교체되면 방통위의 구성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새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그것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어떤 정책도 여러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또 국내 현실을 반영해서 국정방향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전 방통위의 입장 신중검토라든가 또는 국정과제에 이 사안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수신료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KBS 수신료에 대해서 입법 부인 국회 그리고 행정부의 주무관청인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그 외에도 이해당사자인 KBS, 학계 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여러 논의 중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즉,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입니다.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서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책임 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며, 나아가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수신료의 금액, 납부의무자의 범위, 그리고 징수절차는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 KBS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신료 징수 업무를 KBS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또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 할 것인지, 그리고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입니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국민 불편의 호소와 시대적 변화 요구 등을 반영하여 이를 적정하게 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KBS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사로서 그 주인은 엄연히 국민입니다. KBS 사장, 임직원 등 그 구성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방송 관련 업무와 공적책임을 수행하는 것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국내 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방송의 목적과 그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현재 KBS 수신료 2,500원은 지금까지 42년 전인 '81년 4월에 그 금액이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어 왔습니다. 또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제도는 1994년 10월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동안 KBS는 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여러 차례 의결해서 국회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번번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국회의 여야 구도가 바뀐 상황에서도 수신료 인상(안)은 한결같이 좌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KBS의 방만한 경영 형태, 자구노력의 외면, 공적책임 수행 미흡,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에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의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했고, 동료 이사들과 함께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서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지적사항을 반드시 개선할 것을 KBS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KBS의 이에 대한 개선노력은 현저히 미흡하였습니다. KBS는 아직도 방송계 만형이라는 종전의 허상에 안주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왔습니다. 또한 KBS 자사 이기주의에 더해서 점점 더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려 끊임없는 공정성 시비논란을 일으키는 등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심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이 된 오늘에 있어서 영국의 BBC나 일본 NHK에 버금가는 공영방송 KBS를 갖고 싶었던 저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과연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였는지, 국민의 방송으로서 역할과 기능, 책임을 다해 왔는지 왜 이러한 '수신료 납부 반대'라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는지 공사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합징수에 대한 국민적 불편과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그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공영방송 KBS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논의를 통해 일반 국민, 관련 부처,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KBS, 학계 등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동안 궁정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수신료산정위원회 등 여러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 이후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원만히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사무처에서 올린 이 시행령 개정안 보고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의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110대 국정 과제 가운데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그 어디에도 수신료 관련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2월에 수신료 투명성 강화입니다. 2023년 한상혁 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서면보고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아까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혁신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라는 내용 중 6쪽에 보면 수신료 투명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회계분리 제도 도입,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 배분 기준 마련입니다. 현재 통합징수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가지고 KBS 한국방송공사와 EBS가 제대로 하되,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수신료가 과연 2,500원 40년 전 그 금액으로 해서 콘텐츠 제작이나 발전되는 OTT 경쟁에 발맞출 수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수신료를 현실화 시켜야 되겠기에 투명성 강화, 회계분리 제도를 도입해서 배분을 좀 더 하자 이런 취지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2월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자마자 3월 9일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해서 분리징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권고에 보면 수신료 폐지의견이 많아서 제기됐다. 그러면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이것대로 수신료를 폐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일단 거기부터 모순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방통위는 제5기 방통위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리하는 시기에 있는데 느닷없이 수신료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를 하라는 시행령을 받아 안고 그냥 우물가에서 송늉 찾는 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8일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1999년도 5월 27일 헌법 위헌소원에 대한 판결문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앞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정신을 망각하고 3인 체제에서 2인의 동의를 통해서 보고하고 안전 상정하는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KBS 이사회에서 다수 의결로 이사 해임을 부결시킨 것을 그것은 다수결이지만 우리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을 통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수결은 부정되고, 이 다수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은 법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보고와 검토자료 없이 이렇게 떠밀려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기능을 보호하고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앞서 용산에서 권고안으로 내건 수신료 폐지 여론이 높은 만큼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100원으로부터 시작했고 1981년 4월부터 컬러TV 수신료를 2,500원 받은 이래 40년 동안 유지됐고, '94년 10월 1일부터 한전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강제징수 논란은 공영방송 재원구조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여야를 불문하고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중심을 갖고 KBS 수신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검토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방통위 설치 이래 텔레비전 수상기와 관련된 분리징수, 또는 통합징수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실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와 안건은 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6만명 정도 참여해서 93% 동의 했으면 시행령 개정해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방만경영 이유라고 하는데 방만경영의 배경은 19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해서 KBS 방송보도가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거에 들어왔기 때문이며, 방통위가 지난 2020년 재허가 당시에 방만경영 및 공적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에 대해 2027년까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4년 허가증을 내줬습니다. 그 허가증에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수신료를 통합징수하지 않으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안 된다. 아니면 시행령이 통과되자마자 한전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수신료를 걷지 않게 되면 상업광고를 못 하도록 규정을 내렸는데 방송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한다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방송법이 TV수상기를 보유한 사람들은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납부의무자와 납부방법을 분리·징수할 경우에 이것을 논의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체납하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됩니다. 외국의 사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 법재판소에서 특별부담금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혼든다면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 정식 결정한다면 방송업계와 국민들에게 명백한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제안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처에서는 오류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시스템적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이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내용의 경우에도 대부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예시로 들고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 정도 이지….

○ 김 현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청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등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수신료를 부가가치세로 걷고 있고 일본도 2025년까지 인하하지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그 수신료는 걷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대로 보면 폐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짧게 줄여 주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왜 자꾸 회의를 방해하십니까? 왜 짧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왜 듣기 싫다고 자꾸 방해하십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요점을 말씀하셔야지,

○ 김 현 상임위원

- 논점이지요. 왜 판단하십니까? 평가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요점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앞서 이상인 위원님도 길게 이야기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KBS에 대한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편성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공정하게 운영하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짧게 해 주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궁금한 것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짧게 정리될 문제입니까? 수신료 한 줄,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짧게 정리 안 됩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정리 안 되지요. 위원회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님이 듣기 싫은 소리 있다고 그렇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한지 1시간 밖에 안 됐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 김 현 상임위원

-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평가하지 마시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아니, 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무 말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듣는 것은 당연히 위원장님의 권한이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런데 자꾸 주어반복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은 우리가 비공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동어반복, 주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처음 있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비공개 간담회 하시지 말고 공식회의에서 다 다루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공개에서 논의된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서 공식 회의 다 했습니다. 그것 변환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공개 차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틀려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팩트라고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됐는데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안서에 유죄가 됐다고만 하고 국민들에게 의견제시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만큼은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제안서에는 명백하게 청구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이 각하됐다. 그래서 정당하다. 특별부담금으로 걷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수신료 폐지해서 부가가치세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인하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 비해서 10배 넘는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부담금이 너무 크니까 그 비용을 10% 정도 절감하면서 향후 폐지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폐지됐다, 인하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보고 폐지하자고 하면 폐지하지요. 돈 안 내겠다, 그러면 전기료도 내지 말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재원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2008년도 설치법 이래 이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2,500원 정도가 약하지만 통합징수를 해야 한다는 방통위 내 컨센서스(Consensus)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산에서 3월에 한 달 정도 문항을 제시해서 거기에 참여한 6만 명의 국민이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령을 적어도 정부 간 논의하고 의견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프로세스가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보고서도 6월 5일 권고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지 향후 일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를 상정하는 것을 적어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방통위가 모아나갈지 검토하고 보고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졸속보고해서 그것도 최민희 내정자는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놓지 않은 상황을 틈타서 2명의 의결로 졸속심의와 졸속보고를 하고 부실한 내

용을 갖고 그리고 국민들은 용산에서 KBS 보도, 편향된 보도와 사실보도에 부합하는 내용 조차도 듣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KBS 경영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한 분도 있고 국회에서 추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KBS 재허가, 5인 체제에서 4년 허가 낼 때 그때 동의했던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년 사업계획서 허가 낼 때 전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제를 무시하고 운영하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 고쳐서 이것을 부처에서 협의하고 위원회가 의결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유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저는 회의 진행을 해야 하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4월 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는데 수신료와 관련된 것은 역사가 굉장히 멀고 깊습니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TV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 제도를 시정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런 제안이유였습니다. 똑같은 조항을 해서는 아니 한다라는 개정안인데 박주민 의원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17조제1항에 “다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는 꽤 역사가 오래 되었고, 국민적인 합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금이 아니라는 현재의 판단이 나왔지요. 그렇지만 사실상 세금과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수신료 징수 문제는 어떻게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느 정부가 그 일을 집행하느냐의 문제이지, 논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 현 위원님은 논의를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내셨고, 이상인 위원님은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또한 합의제기관에서 합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정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 합의가 안 되면 숙려기간을 갖고 협의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주민 의원을 이야기하는데 선택적으로 제한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이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관련한 또는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와 관련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덧붙이자면 2010년 1월에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의 미디어 광고시장이 풀린다고 수신료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은 반대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야당에서 반대했고, 여당에서는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논쟁이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심을 갖고 인사청문위원회를 통해서 인사 추천을 받은 위원장이 있을 때는 공정하게 운영돼서 이 징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논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비교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을 용산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빌려 사실관계 일부 왜곡된 것을 정치적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방통위가 받아서 시행령을 고치겠다, 그것도 일부 일정, 향후 일정에 대한 충분한 숙의나 검토 없이 그리고 방향에 대한 것 없이 상정부터 하겠다, 이것이 졸속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직무대행으로서 사회적·정치적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라는 법률해석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주당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부당한 위원회 즉시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민주당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정상적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중단하고 위법 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퇴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청래, 정필모, 조승래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으로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요구이지만 방통위는 적어도 중립의, 독립의 기구인 만큼 충분한 일정을 사무처에서 준비해서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진행한 후 상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졸속적으로 합니까?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6월 8일, 오늘 6월 14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 만에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대행께서도 이 사항을 그동안 기획조정관으로 있으면서 또는 그 뒤에 회의를 준비하는 팀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5일 만에 시행령을 상정한 예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숙려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올립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하지 마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현 위원님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아니, 충분히 정리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은 원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저 역시 원안에 찬성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 역시 2 대 1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하시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접수되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저는 퇴장합니다. 막 하십시오.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고 2명으로 막 운영하십시오.

(김 현 상임위원 11시 20분 퇴장)

【 11시 20분 】

6.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2023-19-045) (비공개)

【 11시 26분 】

8. 기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7분 폐회 】